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.

발 의 자 : 김 윤 정 위원 외 인

## 1. 개정이유

전문위원 직종을 조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의회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 및 집행부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전문위원 직종 변경(안 제4조)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전문위원	지방별정직5급상당 2명	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, 지방행정사무관 1명
	지방행정주사 2명	지방행정주사 1명,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

나.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3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4. 입법예고 : 필요

5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

6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”로, “정수(이하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”를 “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회의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”로, “사무국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(이하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장의 지휘 · 감독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지휘 · 감독”으로, “운영등 입법활동”을 “운영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의회사무국장”을 “사무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· 감독한다”를 “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 · 감독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5급상당 지방별정직 2명과 지방행정주사 2명”을 “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, 지방행정사무관 1명, 지방행정주사 1명,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”로, “지휘 · 감독”을 “지휘 · 감독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사무직원”을 “직원”으로 한다.

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----- ----- ----- -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---- ----- ----- -.</p>
<p>제2조(직무)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.</p>	<p>제2조(직무)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-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(이하 “사무국”이라 한다)--.</p>
<p>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 ·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</p>	<p>②-----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지휘 · 감독-- 운영 등--.</p>
<p>제3조(사무국장)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(이하 “사무국장”이라 한다)과 사무직원(이하 “직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</p>	<p>제3조(사무국장) ①-----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장---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③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</p>	<p>③-----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, 소속 직원을 지휘 · 감독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전문위원) ①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, 전문위원은 5급상당 지방별정직 2명과 지방행정주사 2명으로 보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p>	<p>제4조(전문위원) ①----- ----- ----- 지방별정 직5급상당 1명, 지방행정사무관 1명, 지방행정주사 1명,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1명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----- ----- -- 지휘·감독-----.</p>
<p>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직원의 정원) ----- 직원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시행규칙)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6조(시행규칙)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